

“발포명령자·암매장 밝히자는데 한국당 반대하는 이유 뭔가”

국회 5·18특별법 토론회 무슨 내용 오갔나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성토장이었다.

토론회 참석 의원들마다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각각 5·18진상규명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한국당 측의 비협조로 법안이 수개월째 소관상임위(국방위)에 잠들어 있다”는 취지의 비판과 더불어 한국당 측의 신속한 입장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내용과 법안 통과 의 당위성을 재차 확인하며 법안에서 보완돼야 할 내용도 논의했다. 특별법에 근거해 꾸러질 진상규명 조사위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기존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된 동행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 이상의 형벌로 규정하고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조항, 청문회 개최 조항을 새롭게 넣자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성도장=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한국당을 비판하면서 국회선진화법(2015년 개정된 국회법)의 안전 신속처리 규정으로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야 하는 집권 여당의 사령탑이지만, 이날은 작심한 듯 특별법안 통과 의 당위성과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강조했다. 한국당 측이 끝까지 태도변화가 없다면, 국민의당과 손잡고 사회적참사법을 통과시켰듯이 5·18진상규명 특별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2는 국회 재적의원 또는 안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요구로 법안을 '신속 안전'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하자”

한국당 성도·태도 변화 촉구

진실 고백 가해자 화해조치

동행명령 개선 등 보완도 논의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당 측 반발에도 이 규정을 심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아직까지 특별법이 통과 안돼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그분들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당위성을 못 느끼는 분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우회적이지만 강하게 한국당을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5·18 진상을 규명하자는데 왜 한국당이 반대하느냐”며 불만을 표했지만 한국당을 크게 자극해서는 법안 처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듯, “국회에서 한국당과도 논의를 하지만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안 당위 확인하며 보완 필요성도 논의=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김정호 변호사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에 추가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의원이 제시한 법안에는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가 담겨있지 않는데 이를 반영해야만, 실제적 진실 규명에 보탬이 될 것이라 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의원, 안종철 5·18 국방부 특별조사위 위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용이었다.

또한 조사권한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서 동행명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따른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모욕죄와 유사하게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최소한 과태료가 아닌 형벌(벌금 이상)을 규정해

야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청문회 개최 조항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제안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3개의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은 법안에 근거해 진상규명위를 꾸리고 발포명령책임자·헬기사격명령자·암매장 등 5·18

핵심의혹을 규명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지시와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활동 중인 국방부 5·18특조위가 갖지 못한 강력한 조사권(증인 동행명령·압수수색의뢰)을 갖추고 조사기간도 최대 3년으로 길다.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조항도 담겼으며, 국가차원의 5·18백서도 펴내기로 돼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 1명·전남 6명 광역의원 줄인다는데...

행안부 정수 조정안 국회 제출

지역정치권 “지방의회 소멸” 반발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동구의 광역의원 1명을 줄이고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흥지역 전남도의원 1명씩 총 6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확정 및 정수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걸쳐 있는 선거구(전국 44개) 및 헌법재판소 인구기준 상한 초과(32개), 하한 미달(12개) 선거구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지역정치권은 “행안부 안대로 선거구가 재획정되면 광주·전남 등 모든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시·도의원 선거구 확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구와 국회의원 지역구 변동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한 후 공직선거법 개정에 들어간다.

행안부의 제1안은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기본 정수(667명)로 4명 증가만 인정하는 경우로 26개 선거구가 신설되고 22개가 통합된다. 광주의 경우 시의원 총원(19명)은 변동 없으나 동구에서 1명이 줄고 광산구는 1명이는다.

전남의 경우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성군 도의원이 1명씩 총 6명이 줄어 전남도 의원은 46명이 된다.

또 경북도의회는 50명으로 4명, 강원도의회는 38명으로 2명, 대구시의회는 26명으로 1명이 줄어 들지만 서울시의회는 4명 늘어 667명, 경기도의회는 12명이 늘어난 128명, 인천시의회는 1명 증가한 32명이 된다.

행안부의 제2안은 공직선거법상 광역시·도의 기본정수를 인정하되 기본정수보다 많은 현재 정

수는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법상 인원보다 기본정수가 많은 시·도(광주·전남·대구·대전·울산·강원·경북)의 경우 현 정수는 그대로 인정되던 선거구는 일부 조정된다. 전국 광역의원 정수는 17명 증가한 663명이 된다.

광주의 경우 광산의 광주시의원이 1명 늘고 동구는 1명이 줄어든다. 전남의 경우 순천의 전남도 의원 1명이 늘고 함평은 1명이 준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 동구를 우선으로 선거구를 통합하고 조정한다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내놨고, 황주홍 의원은 “군(郡)별로 2명인데, 6개 군에서 1명을 줄이면 지역민의 제대로 대표하는 의회가 꾸러지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안은 참고자료일 뿐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이대론 지방분권 개헌 물 건너간다”

의결 절차 최대 110일 소요

2월 중순까지 개헌안 마련해야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 가능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헌법 개정 절차는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공포’를 거친다. 이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법률적으로 최대 110일이 소요된다.

우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은 20일안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개헌안 공고가 마무리되면 60일 안에 국회가 의결한다. 의결은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면 30일 이내 국민 투

표에 부치고, 투표 참여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안은 확정된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즉시 공포하게 된다.

이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내년 5월 13일까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끝나야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또 3월 12일까지는 개정안에 대한 공고가 끝나야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20일의 공고 기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2월 셋째 주까지 헌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게다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설날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보다 빨리 헌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관계자는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 당리당락에 따라 헌법 개정 미온적인 정치권을 전방위로 압박하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65주년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오!

빈용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역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용기(2016년 12월 31일 기준)	2017. 1. 1. 부터 출고된 용기(2017년 1월 1일 기준)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2)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음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인상 전] → [인상 후]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